

인천지방법원 2022. 1. 28 선고 2021가단1400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

피 고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훈

변 론 종 결 2021. 11. 19.

판 결 선 고 2022. 1. 2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. 8. 13. 접수 제29757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원고는 C, D과 축산물거래약정에 기하여 축산물 공급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

부동산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이라 한다)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C, D이 위 거래약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남효정